<論 說>

# 韓國畜產의 經濟的展望(I)

農林部 提供

이 글은 미국 택사스 農工大學의 "에드와드 우바첵"씨가 1963년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축산고문으로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축산의 문제점 및 전망에 관하여 세밀하게 분석 검토한 내용으로서 전국회원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 게재합니다.

〈編輯者 註〉

## 一. 緒 論

韓國畜產의 經濟的展望에 關하여는 駐韓美國經濟協助處(USOM/KOREA)의 相當한 關心事가 되어 있다.

大韓民國의 許多한 政府關係機關은 畜產發展에 關係되는 여러 分野에 걸쳐 其責務를 맡고 있으며 여기에 加하여 家畜의 增殖增進과 畜產物利用 增進에 關心을 갖고 있는 個人企業體도 數個業體에 達하는 것이다.

駐韓美國經濟協助가 本顧問을 招請한 것은 韓國의 畜產現況을 調査하고 將次 發展性에 對한 經濟的 可能性을 檢討함으로서 畜產發展의 展望을 評價하기 위함이 었던 것이다.

本顧問은 本任務를 遂行함에 있어 協助와 扶助를 베풀어주신 駐韓美國經濟協助處 農村開發局長 Jae R. motheral 博士와 大韓民國 農林部 畜產局長 柳允洙氏에게 謝意를 表하고자 하는바이며 本人의 通譯 및 韓國畜產助言者로서 活動한 李泳錫氏에 對하여 또한 格別한 謝意를 보내는 바이다.

本報告書에 提示된 資料는 主로 政府官吏, 農民, 產業人, 企業體와의 接見과 本人의 直接的인 觀察을 通하여 얻은것이 었으나 農林部 農協中央會 및 其他 政府官吏들이 提供한 參考資料書類도 相當히 있었다.

때에 따라 情勢의 複雜性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意見이 提起되었을 경우 本顧問은 可能한 限 實情把握에 努力은 하였으나 大體的으로 本人自身의 最終解得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韓國畜產業에 關한 本報告書內의 陳述에 對한 信賴性은 本顧問의 解得能力限度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1. 畜產業 現況

1961年度의 韓國農村人口는 總人口數의 58.1%를 占하고 있었으나 農業就業人口數는 全國總就業人口數의 79.5%를 占하고 있었다.

總人口數에 對한 農家戶數比率은 1957年以來로 漸次減少되고 있으며 農家戶數의 43%에 該當하는 農家는 耕作地面積이 1町步(1町步=0.99ha=2.45에이카)未滿이고 남어지 53%에 該當하는 農家는 其 耕作面積이 1町步 내지 2町步에 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韓國의 農家耕作面積은 耕作地에 對한 農村人口의 高率과 耕作地 分配面積 最高基準을 3町步로 確定한 初期農地改革에 由因하는 것이라 하겠다.

主畜農業은 高度로 置重되어 있고 畜產은 이러한 主穀農業의 副業 내지는 副產物的 存在인 것이 通例인 것이다. 畜牛의 主要用途는 勞役과 販賣를 위한 犢牛生產인 것이다. 肉用으로서의 畜牛의 販賣는 最高勞役年限이 經過한 然後의 一種의 副次的인 것으로 考慮되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 韓國에 있어서 畜產生產者라고 할만한 程度의 部類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 程度는 總農家者의 0.2%에 不過한 것이다.

韓國에는 9個道가 있으며 其中 2個道와 서울特別市가 總人口의 37%를 占하고 있으며 畜產은 比較的 全國的으로 分布되어 있다. 畜牛가 가장 많은 道는 慶北道이며 全南에는 豚과 닭이 많고 山羊이 가장 많은 道는 慶南이며 馬와 緬羊의 大部分은 濟州道에 있다.

다음 圖表 1. 2 및 3은 畜種別 生產數에 依한 道別分布圖인 것이다. 人口가 畜產生產中心地가 아닌 딴 地域에 集中되어 있는 關係上 屠殺用 家畜은 其 消費地域에 移動되어야 만 하게되어 있다.

#### 가. 畜產增殖

種畜에 따라서는 過去 數年間에 顯著한 數的 成長을 보여주고 있으며 第一表는 1956年부터 1962年까지의

家畜의 動態率을 表示한 것이다.

여기서 想起하여야 할것은 畜種에 따라서는 其數的 成長率은 海外에서의 導入으로 影響받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韓國에서 生産되는 主要畜種은 畜牛, 豚, 家兎 및 家鷄이며 또한 數的으로도 가장 많이 增殖되고 있다. 이들 畜種中에서 導入影響을 많이 받은것은 家鷄뿐이며 過去 四年間에 導入된 家畜은 單至 21頭의 돼지와 家兎 250頭인 것이다.

表1 韓國

1956 및 1962年度 家畜統計 및 增減比率

| 畜 種 | 1956 | 1962 | 1956對1962年比率 | 備 考 |
|---|---|---|---|---|
| | 數 | 數 | % | |
| 韓 牛 | 916,793 | 1,252,550 | 37 | |
| 乳 牛 | 395 | 2,406 | 509 | |
| 肉 牛 | — | 861 | — | |
| 馬 | 17,201 | 25,176 | 46 | |
| 豚 | 1,161,417 | 1,671,935 | 44 | |
| 緬 羊 | 597 | 1,465 | 145 | |
| 山 羊 | 51,409 | 313,449 | 510 | |
| 兎 | 291,256 | 1,316,714 | 352 | |
| 鷄 | 9,031,338 | 13,046,867 | 44 | |

出處：農林部 畜產局

1956年 以後 畜種 大半에 걸쳐 아주 顯著한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圖表 4는 主要畜種의 過去 動態를 圖示한 것이며 點線은 農林部 畜產 5個年計劃에 依한 計劃數字를 表示한 것이다.

1962年度에 對하여는 其年末實態가 把握되기 前에 計劃이 完結되어 있는 關係上 實態數와 計劃數를 共히 圖表하였다.

나. 政府의 家畜增殖計劃

農林部는 畜產奬勵 5個年計劃을 樹立하였으며 其 概要는 第2表에 表示되어 있다.

乳牛의 增加率이 極度로 高率인데 이것은 向後 5個年間에 걸쳐 年間 1000頭式의 어린 乳牛導入計劃이 樹立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農林部는 強力한 畜產奬勵計劃을 通하여 畜種全般에 걸쳐 增殖할 意圖이며 種畜分配에 있어서는 畜產試驗場에서 道種畜場 여기서 民間種畜場을 通하여 結局 各部落內의 指定 農民에게 普及되기 위한 特殊한 分配體系가 樹立되어 있는 것이다.

增殖되는 家畜에 對한 飼料需要量도 本計劃에 있어서 推算되어 있으며 製粉用 輸入小麥 副產物을 包含한 國內濃厚飼料生產은 漸次的으로 自給自足하는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 期待된다.

1962年度에 있어서의 飼料導入 計劃은 30,000屯으로 되어 있고 1964年度 導入計劃量이 最高로서 66,000屯

第2表 韓國

畜 產 5 個 年 增 殖 計 劃

1963～1966年計劃頭數 및 1962年 統計頭數

| 畜 種 | 1962 | 計劃頭數 | | | | 1962年對1966年比率 |
|---|---|---|---|---|---|---|
| | | 1963 | 1964 | 1965 | 1966 | |
|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 畜 牛 | 1,252,550 | 1,189,100 | 1,232,650 | 1,301,135 | 1,369,600 | 9 |
| 乳 牛 | 2,406 | 4,370 | 6,823 | 9,794 | 13,294 | 453 |
| 豚 | 1,671,935 | 1,622,700 | 1,646,100 | 1,647,400 | 1,648,700 | −1 |
| 乳 山 羊 | 12,969 | 12,580 | 14,500 | 16,730 | 19,340 | 49 |
| 鷄 | 13,046,867 | 13,573,000 | 13,844,000 | 14,121,000 | 14,403,000 | 10 |
| 兎 | 1,316,714 | 1,587,900 | 1,945,700 | 2,383,500 | 2,919,800 | 128 |
| 馬 | 25,176 | 24,740 | 24,740 | 24,740 | 24,740 | −2 |
| | 箱數 | 箱數 | 箱數 | 箱數 | 箱數 | 箱數 |
| 蜜 蜂 | 140,594 | 165,000 | 185,000 | 207,000 | 232,000 | 65 |
|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頭數 |
| 緬 羊 | 1,465 | 2,030 | 2,400 | 2,820 | 3,300 | 125 |
| 在 來 山 羊 | 300,480 | 250,000 | 263,800 | 276,900 | 289,100 | −4 |
| 오 리 | 219,021 | 288,500 | 288,500 | 288,500 | 288,500 | 32 |

出處：農林部 畜產局 畜產奬勵 5個年計劃
1. 每年 12月 31日現在 頭數
2. 蜜蜂箱數

1966年度에는 13,000屯으로 減少되어 있다. 그 濃厚飼料 需給計劃을 要約하면

| 區分 | 1962年 | 1966年 | 備考 |
|---|---|---|---|
| 總需要量 | 1,314,000 | 1,792,000 | |
| 一般飼料 1) | 1,153,000 | 1,427,000 | |
| 不足量 | 161,000 | 365,000 | |
| 自給飼料 2) | 131,000 | 353,000 | |
| 導入飼料 | 30,000 | 12,000 | |

1) 農民이 外部에서 購入하는 飼料이며 主로 年間導入小麥 및 大麥에서 生產되는 133,000屯의 副產物을 包含한 糧穀搗精副產物인 것이다.

2) 農民自體生產飼料이며 飼料用으로 栽培한 호박, 甘藷, 옥수수 및 수수等이다.

家畜 增殖을 위한 粗飼料 生產 및 牧草利用은 牧野開發을 위한

(1) 政府奬勵 및 補助

(2) 牧草種子分配를 通한 牧草生產 奬勵

(3) 牧草種子生產 및 分配

(4) 飼料確保를 위한 牧草收集指導 및 埋草生產奬勵

業에 依하여 改善될 것이 期待된다.

農林部는 畜種別 飼料需要量 및 改良種畜에 對한 配定體系를 樹立하는데 훌륭한 솜씨를 보여 주고 있으며 飼料資源도 同計劃에 있어서 國內生產數量에 基礎한 合理的인 것으로 느껴진다.

1955年以來로 韓國에 있어서의 總糧穀生產 增加速度는 人口增加速度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第3表) 公表된 統計數字에 依하여 1960~1962年間의 平均數를 1955年數字에 對比하여 보면 人口增加率은 19.5% 米穀生產率은 9.1%이며 總糧穀 生產率은 15.3%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이 繼續하는 限 보다 高率을 보여주고 있는 人口增加로 因한 食糧不足은 必然的으로 家畜飼料用으로 利用될 糧穀副產物은 그 種類에 따라서는 甚한 危脅을 받게 될것이다.

**第3表 韓國**

1956~62年間 人口數 米穀 및 總穀物生產高

| 年度 | 人口數 | 米穀生產 | 總穀物生產 | 備考 |
|---|---|---|---|---|
| | 單位 1,000 | 單位 1,000石 | 單位 1,000石 | |
| 1955 | 21,516 | 15,515 | 24,430 | |
| 1956 | 22,306 | 12,781 | 21,752 | |
| 1957 | 22,949 | 15,738 | 24,181 | |
| 1958 | 23,611 | 16,595 | 26,390 | |
| 1959 | 24,291 | 16,602 | 27,039 | |
| 1960 | 24,989 | 15,949 | 26,414 | |
| 1961 | 25,709 | 18,903 | 30,627 | |
| 1962 | 26,450 | 15,938 | 27,472 | |
| 1960~62年平均 | 25,716 | 16,930 | 28,171 | |
| 1955年對1960~62年平均對比 | 119.5 | 109.1 | 115.3 | |

出處：經濟計劃院統計局・農林部糧政局

1 年末人口數

다. 畜產物購販體系(家畜市場의 組織)

韓牛가 農民으로부터 消費者에게 넘어가는 經路는 돼지 購販體系와는 아주 틀리는 까닭에 이 兩者를 個別的으로 檢討하는 것의 必要하다.

1) 畜 牛

韓國에 있어서의 畜牛購販體系는 其原理에 있어서는 簡單하나 賣買行爲가 役用이냐 消費用(肉用)이냐에 關聯되어 있는 까닭에 說明하기에는 꾀 復雜하다.

下記에 揭示한 略圖式은 이러한 買賣經路를 說明하고저 提示하였다.

別表 A로서 첨부한 寫本에서 보는바와 같이 農協中央會에서 提示한 것은 本圖式보다 더 複雜하게 되어있다.

가) 地方 小市場

이러한 地方村落 또는 小都市 市場은 農民이 其家畜을 買賣하기 爲한 便利한 買賣場所를 提供하는 것이며 其所有 및 運營者는 面 또는 邑事務所인 것이다.

이러한 小市場에서 取扱되는 畜牛는 實際에 있어서 모두 役用牛이며 또한 其出畜者의 大部分은 農民들로써 出場牛數의 約 90%를 點하고 있다.

이러한 小市場이라 함은 邑과 面에 所在하는 市場을 말하는 것이다.

나) 地方中市場

이 市場은 그 規模와 取扱頭數는 小市場 보다는 크나 其運營方式은 小市員과 꼭 같은 方式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郡程度에 所在하는 市場에 出場되는 畜牛의 約 75%는 農民들이 其出場者이며 남어지는 家畜商人들이 出場하는 것이다.

이러한 程度에 該當하는 市場의 代表的인 것은 慶州 光州 및 溫陽等에 所在하고 있으며 이러한 市場에서 買賣되는 畜牛의 約 90%는 役牛用이며 其中 2/3는 家

畜商人손에 넘어 간다.

肉用을 目的으로 이 市場에 出場되는 畜牛는 極히 적은 數字다. 屠畜用牛의 1/3程度가 商人들에 依해 購買되는 程度이며 商人들이 여기서 肉用牛를 購買하였을 境遇에는 이 보다도 더 큰 市場에 가지고 가서 再販賣하려고 하는 것이 普通이지만 直接 食肉業者에게 販賣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商人들은 이 市場에서 여윈소 또는 屠殺하기에는 充分히 살찌지 않은 소를 사서 再販賣하기 前에 肥育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다) 大 또는 都市市場

都市의 큰 市場은 肉用牛의 最終去來所役割을 하는 것이어서 이 市場에 出場되는 牛의 約 90%는 肉用에 屬하는 牛인 것이다. 役用牛도 取扱되기는 하나 1週日 中 限定된 날에 限하는데 反하여 肉用牛取扱은 每日 있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屠畜場 大部分은 이러한 大市場이 있는 곳에 所在하는 것이다.

畜牛生產地域이라는 것이 普通 이러한 大市場과 동떨어져 있는 까닭에 農民으로써의 販賣者는 極少한 것이 普通이며 例컨데 서울市場에 있어서 出場牛數의 99%에 가까운 數가 家畜商人의 손에 依해 들어온 것이었다. 이러한 商人들은 또한 그들 소의 約 99%는 地方市場에서 購入하는 것이며 따라서 直接 農民에게서 購入하는 것은 實際的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第四表는 各層 家畜市場에서 賦課되는 代表的인 手數料를 表示하는 것이다.

第4表 韓國

代表的인 頭當市場手數料 1963

| 家畜市場名 | 牛 | | 豚 | |
|---|---|---|---|---|
| | 成牛 | 犢牛 | 成豚 | 仔豚 |
| | 원 | 원 | 원 | 원 |
| 小市場 | | | | |
| 金浦 | 10 | 5 | 3 | — |
| 連川 | 10 | 5 | 3 | — |
| 中市場 | | | | |
| 慶州 | 10 | 3 | 3 | — |
| 溫陽 | 10 | — | 2 | — |
| 大市場 | | | | |
| 서울 | 12 | 10 | 2 | 1 |
| 釜山 | 12 | — | 2 | — |

出處：農林部 畜產局

1) 이外에 各家畜市場에 仲介手數料를 徵收하는 畜協(農協의 誤植—譯者註)은 實際買賣된 畜牛에 對하여 頭當 買賣價格의 2%를 徵收함.

라) 牛商人

牛商人은 農村 또는 地方家畜市場에서 소를 사서 大都市 家畜市場에서 食肉業者에게 販賣하거나 다른 農民에게 파는 것이다. 牛商人의 普通 牛輸送方式은 徒步에 依한 것이지만 貨物自動車나 鐵道便을 利用하는 繁盛한 商人들도 있다.

牛商人들은 地方市場에서 屠殺하기에는 좀 살이 덜 찐 소 몇마리를 사다가 飼育한 後 큰 市場 또는 直接 食肉業者에게 販賣하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牛商人은 牛商人일 뿐만 아니라 短期飼育者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食肉業者는 牛商人이 소를 사서 주게되면 手數料를 주거나 또한 食肉業者가 直接 自身을 爲한 牛商人役割을 하는 일은 非凡한 일이 아니며 牛商人이 食肉業者에게 소를 사서 주게될 경우 그 奉仕料로서 때로는 其소의 原文를 주는 수가 있다.

마) 食肉業者

韓國에 있어서의 食肉業者는 畜產을 購入하여 市立屠場에서 屠殺해서 그 食肉을 消費者에게 小賣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實에 있어서 食肉業者는 家畜購買者, 屠殺者 뼈사김者(Boner) 및 小賣業者 役割을 모두 하는 것이다. 食肉業者는 모다 許可制이며 嚴格한 衛生規定을 遵守하지 않으면 안된다.

鄕山에 있어서는 大槪의 食肉業者는 直接 自己들이 生畜을 사지 않고 許可證 있는 食肉業者의 名儀를 빌려 家畜을 屠殺하는 業者에게서 屠體를 購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其業者는 牛購入者 屠殺處理者 및 食肉都賣業者役割을 하는 것이다.

서울市內 某食肉店에서 販賣되는 牛肉小賣價格

| 品名 | 價格 | 備考 |
|---|---|---|
| 牛肉·精肉 | 1) 근當 100원 | 모든 肉種에 均一價格 |
| 骨·都賣 | 屠體當 350원 | 大飮食店에 |
| 骨·小賣 | 屠體當 450원 | 一定한 價格이 없음(平均) |
| 內장 | 근當 50원 | 內장種別에 關係없이 |
| 頭足 | 頭當 800원 (前金引受—豫賣價格) | 一定價格 無一普通 頭足業者에게 販賣 |
| 牛血 | 頭當 1,500원 | 一定價格 無一普通 牛血業者에 販賣 |

屠殺 뼈새김질(Boner) 稅金, 運搬費 및 其他 雜費는

牛頭實 約 1,675원이며 食肉小賣에 있어 約 90%는 現金으로 販賣되고 남어지가 外上으로 去來된다.

바) 屠畜場

韓國에 있어서의 屠畜作業은 多樣多色한 條件下에서 行하여 지고 있다. 서울이나 釜山 같은 大都市에는 衛生的이고 能率的인 屠畜作業을 할 수 있는 充分한 設備를 갖춘 現代的인 屠場이 있으나 좀 農村地帶에 들어 가게 되면 뒷뜰안에서의 屠畜에서 부터 적은 움막 같은 屠場에 이르는 여러가지 衛生的 및 能率的 條件下에서 行하여 지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 알려져 있는 總屠殺場數는 180個所이며 이들은 比較的 크고 公認된 屠場들인 것이다.

第5表는 全國道別 屠場分布表이며 여기서 銘記하여야 할것은 屠場數는 各道에 있어서의 屠畜數와는 아무 關聯이 없다는 것이다.

第5表—韓國：

1963年度 道別屠場數

| 特別市및道 | 屠場數 | 備考 |
|---|---|---|
| 서 울 | 4 | |
| 京 畿 | 22 | |
| 忠 北 | 13 | |
| 忠 南 | 16 | |
| 全 北 | 18 | |
| 全 南 | 26 | |
| 慶 北 | 28 | |
| 慶 南 | 28 | |
| 江 原 | 21 | |
| 濟 州 | 4 | |
| 合 計 | 180 | |

出處：農林部 畜產局

韓國에 있어서의 屠畜作業은 모두 請託屠殺이고 屠場은 地方行政府의 所有인 것이며 普通地方行政府는 이것을 直接 運營하거나 代行運營을 시키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運營者側은 屠畜에 對하여 頭當 얼마라는 屠畜料를 賦課하며 冷藏室이나 其他 機械使用에 對하여서는 그 外의 手數料가 徵收된다.

屠體肉이 冷藏室에 들어가는 일은 別로 없으며 그런 경우라는 것은 普通 農出을 目的으로 할 경우인 것이다.

2) 豚

돼지가 그 消費者에게 가는 經路는 畜牛買賣經路에 比하면 훨씬 간단하다. 勿論 市販에 나가는 돼지는 모두 育成豚 乃至는 肉用인 것이며 仔豚은 普通 家畜市場에서 去來되지만 肉豚은 直接 中間商人 또는 肉商人 손에 들어 가는 것이다.

下記 圖式은 돼지販賣過程을 圖解한 것이다.

(가) 地方市場

豚市場은 畜牛項에서 論及한 各市場과 同一한 市場이며 장날에는 普通 各種 돼지가 市場에 나오는 것이다.

地方市場에서는 仔豚販賣가 主가 되여 있다. 成豚과 仔豚 市場使用料에 對하여서는 앞의 第4表에 表示하였다.

나) 蒐集者 또는 中商人

豚의 中間商人들은 豚蒐集者 또는 自轉車商人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農家에서나 市場에서 豚을 購入하여 이를 運搬하는 普通 自轉車를 使用하기 때문이다

이 中間商人들은 普通 食肉業者나 큰 豚商 또는 農民에게 直接 販賣하며 家畜市場을 通하는 일은 別로 없다.

따라서 地方市場은 豚蒐集者에 依存하는 일은 極히 드물며 農民이 이 市場의 主된 供給者인 것이다. 豚蒐集者가 大豚商으로 부터 先金을 받고 豚을 大量 蒐集提供하는 일은 普通있는 일이며 實際에 있어서 蒐集者는 注文購入者 역활을 하며 豚商의 注文에 따라 購買하는 것이다.

다) 食肉業者 또는 食肉商

肉用牛가 買賣體系를 通하여 買賣되는데 反하여 肉用豚의 경우에 있어서는 食用業者가 直接 屠體肉을 購買하는 수가 많다.

食肉業者가 生豚으로 購入하여 屠殺하는 수도 있으나 大槪의 食肉業者는 큰 豚業者로 부터 直接 豚肉을 購買하는 것이다.

이 큰 豚業者는 豚蒐集者로 부터 豚을 購入하여 自己顧客 食用業者의 許可證을 얻어 正式 屠殺하는 것이며 大槪의 경우 屠體는 分地되어 全屠體가 必要치 않은 적은 食肉業者들에게 分買된다.

서울에 있는 食肉業者는 大槪 上記한 바와 같은 方式으로 豚을 購入하는데 이것은 自己들이 나가서 直接 生豚을 購入하는 것 보다도 經濟的이기 때문이다.

全屠體를 購入할 경우 四足은 달려 있지만 頭部와 內臟은 包含되지 않는다. 이것은 豚商이 別途로 料食店이나 큰 食肉業者에게 販賣하는 것이다.

現在 서울에서 豚商에게서 購入되는 豚價는 枝肉으로 斤當 46원인 것이다.

라) 輸出業者

豚收集者뿐만 아니라 큰 豚商도 豚輸出商社에 豚을 供給하는 것이다. 이 商社들은 香港에 生豚을 輸出하기 위하여 現在 多量으로 購入하고 있는 것이다. 商社에 따라서는 屠殺半分한 冷凍屠體를 輸出하는 商社도 있다.

輸出業者가 去來線을 確保하고 所期의 規格에 맞는 所要數量을 確保하기 위하여 큰 豚業者에게 흔히 先金을 支拂하며 이리하여 큰 豚業者는 輸出商社에 對한 注文購入者 役割을 하게되는 것이다.

마) 買賣收益 및 經費

家畜이 買賣體系를 通하여 消費者에게 이르기 까지의 全經費를 算出하기란 大端히 곤난하다.

第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認屠場에서 屠殺된 牛, 豚 分布頭數는 大略 人口分布數와 一致되고 있다.

第6表 韓國

道 別 人 口 및 屠 畜 數 (1962)

| 特別市 및 道 | 人口 1) | | 屠畜數 | | | |
|---|---|---|---|---|---|---|
| | | | 畜牛 | | 豚 | |
| | 數 | 分布比率 | 頭數 | 分布比率 | 頭數 | 分布比率 |
| | 千名 | % | 頭 | % | 頭 | % |
| 서울 | 2,577 | 10.3 | 68,001 | 39.5 | 31,204 | 12.5 |
| 京畿 | 2,722 | 10.9 | 22,623 | 13.1 | 40,351 | 16.2 |
| 忠北 | 1,358 | 5.4 | 4,227 | 2.5 | 12,683 | 5.1 |
| 忠南 | 2,500 | 10.0 | 11,295 | 6.6 | 38,609 | 15.5 |
| 全北 | 2,373 | 9.5 | 7,203 | 4.2 | 25,476 | 10.2 |
| 全南 | 3,570 | 14.3 | 7,818 | 4.5 | 31,423 | 12.6 |
| 慶北 | 3,827 | 15.4 | 17,775 | 10.3 | 23.948 | 9.6 |
| 慶南 | 4,131 | 16.6 | 18,234 | 10.6 | 27,571 | 11.1 |
| 江原 | 1,586 | 6.4 | 14,160 | 8.2 | 15,154 | 6.1 |
| 濟州 | 282 | 1.2 | 788 | 0.5 | 2,784 | 1.1 |
| 計 | 24,926 | 100.0 | 172,124 | 100.0 | 249,203 | 100.0 |

出處：農林部 畜產局 家畜衛生課

1) 1961年末現在

全人口의 21%를 占하고 하는 京畿道와 서울에 있어서의 屠畜數는 全屠畜數에 對하여 牛 53%, 豚 29% 慶南北에 있어서는 全體人口의 31%를 占하고 있는데 對하여 屠殺牛 및 豚數는 各各 全體의 21%를 占有하고 있다. 第6表는 家畜의 屠殺은 其消費地域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消費用家畜은 買賣體系를 通하여 이러한 人口密集地帶에 搬出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큰 地方市場이나 都市市場에는 消費用畜이 더 많이 出場되게 되며 消費用牛가 屠場에 到着하기 까지는 하나 이상의 家畜市場을 거치게 되는 것이 普通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肉豚은 市場을 거치는 수가 別로 없으며 豚蒐集者에서 食肉業者에게 直接 가는 것이다.

그러면 典型的인 屠殺用 황소 한마리가 買賣經路를 거쳐 갈 때의 經費를 檢討하여 보자.(第7表)

한 中間商人이 地方市場에서 한 황소를 約 25,000원에 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소를 좀 더 飼育하여 都市市場에 搬出하여 食肉業者에게 30,000원에 販賣한다 그 食肉業者는 其牛肉을 顧客에게 小賣한다.

買賣收益은 勿論 年中 變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現價格關係(第8表)에 依據하여 買賣體系機能 各 단계에 있어서의 經費와 收益內譯을 例示하여 본다.

이 經費내역을 綜合하여 봄으로서 買賣各段階에 있

어서 牛肉에 所要된 원貨에 對한 收入率을 推算할 수 있는 것이다.

第9表에 依하여 보면 韓國畜牛의 生產者는 消費者가 牛肉에 消費한 원貨의 約 78%를 收入하는 것이다.

이러한 分布率은 他國의 例와 좀 다르며 農民은 消費者가 牛肉에 消費하는 원화의 比較的 많은 部分을 獲得하는데 反하여 食肉業者는 屠殺 및 處理와 小賣業까지 兼하고 있으면서 其收入率은 적은 것이다.

第7表 韓國

畜牛頭當買賣 및 屠畜諸掛費—1963

| 件名 | 頭當經費 원 |
|---|---|
| 買賣諸掛費 | |
| 地方市場手數料 | 10 |
| 農協仲介手數料 | 500[2] |
| 都市市場까지의 運賃 | 200 |
| 都市市場手數料 | 12 |
| 農協仲介手數料(都市市場에서) | 600[2] |
| 合計 | 1,322 |
| 屠畜諸掛費 | |
| 國稅 | 321 |
| 地方稅 | 49 |
| 屠畜稅 | 500 |
| 屠畜料 | 95 |
| 檢畜稅 | 60 |
| 合計 | 1,025 |
| 小賣諸掛費 | |
| 店舖까지의 食肉運賃 | 250 |
| 뼈 새김 人夫賃 | 250 |
| 合計 | 500[2] |
| 總買賣諸掛費 | 2,847[2] |

2) 推算牛價 25,000원에 對한 2%

2) 推算牛價 30,000원에 對한 2%

2) 入手할 수 없는 小賣附帶雜費는 包含되어 있지 않음.

第8表 韓國

畜牛頭當 買賣諸經費 및 收入推算

| 項目 | 頭當諸經費 및 收入(원) |
|---|---|
| 生產者收入 | |
| 成壯牛地方市場價格 | 25,000 |
| 買賣緖掛費 | |
| 市場手當料 | 10 |
| 農協仲介手數料 | 250 |
| 買賣緖掛費合計 | 260 |
| 生產者總收入 | |
| 中間商人收入 | |
| 都市市場成牡牛時價 | 30,000 |
| 同成牧牛地方市場時價 | 25,000 |
| 總收益 | 5,000 |
| 買賣緖掛費 | |
| 地方市場에서 | |
| 農協仲介手數料半分 | 250 |
| 都市市場까지의 運賃 | 20 |
| 都市市場에서 | |
| 市場手數料 | 12 |
| 農協仲介手數料 | 600 |
| 買賣緖掛費合計 | 1,062 |
| 買賣緖掛費를 除한 純利益 | 3,938 |
| 牛肉小賣者收入 | |
| 精肉 250근 販賣價 | 25,000 |
| 내장 35근 | 1,750 |
| 頭足 | 1,400 |
| 骨 | 450 |
| 血 | 1,500 |
| 原皮 | 1,800 |
| 總賣上高 | 31,900 |
| 成牡牛都市市場價 | 30,000 |
| 屠畜諸掛費 | 1,025 |
| 小賣緖掛費 | 500 |
| 總經費 | 31,525 |
| 純收益 | 375 |

第9表 韓國

牛肉에 消費한 消費者 원화分散收率推算

| 項目 | 分散收率 |
|---|---|
| 生產者收入 | 78% |
| 買賣 | |
| 買賣諸掛費 | 10 |
| 農協手數料 | 3 |
| 中間商人 및 運搬費 | 13 |
| 買賣分收率合計 | 16% |
| 屠畜 및 小賣 | 6% |
| 合計 | 100% |

1) 1%未滿

라) 輸入 및 輸出

韓國에 있어서의 家畜輸出實績은 大端히 적은데 이것은 輸出할 수 있는 家畜數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와 對照的으로 畜產副產物中에는 輸出實績이 相當한 것이 있다. 第10表는 過去 4年間의 畜產物別 輸出實績이다.

總體的으로 1962年度의 畜產物 輸出 實績은 470萬弗에 達하였다.

豚輸出頭數는 1959年 이래로 大端히 많아졌으며(第11表) 그 以前까지는 韓國에서의 豚輸出은 없었던 것이다. 肥料와의 求償貿易으로 因하여 1962年度 後期 이후에는 豚輸出은 大端히 活潑하여 진것이었다.

第10表 韓國

1959～62年間 年度別畜產物輸出實績

| 項目 | 單位 | 1959 | 1960 | 1961 | 1962 |
|---|---|---|---|---|---|
| 畜牛 | 頭 | — | — | — | 49 |
| 豚 | 〃 | 2,030 | 20,334 | 67,901 | 40,535 |
| 其他動物 | 〃 | 119 | 115 | — | — |
| UN軍納卵을包含한 卵類 | 個 1,000 | 1,983 | 12,095 | 33,932 | 40,164 |
| 豚肉 | % | — | — | 6 | 39 |
| 牛肉 | 頭 | — | — | — | 106 |
| 소세이지 | kg | — | — | — | 1,080 |
| 오리고기 | 頭 | — | — | — | 6,934 |
| 牛骨 | % | 1,165 | 3,576 | 1,203 | 1,921 |
| 毛皮類 | 株또는枚 | 46,025 | 61,441 | 209,448 | 109,729 |
| 豚毛 | % | — | — | 201 | 165 |

第11表 韓國

1959～62年間 年度別生豚香港輸出實績

| 年度 | 頭數 | 金額 | |
|---|---|---|---|
| | | 弗貨總額 | 頭當平均價格 |
| | 頭 | | 弗貨 |
| 1959 | 2,030 | 94,315 | 46.50 |
| 1960 | 20,334 | 870,088 | 42.80 |
| 1961 | 67,901 | 2,935,763 | 43.20 |
| 1962 | 40,535 | 1,677,564 | 41.40 |

生豚 輸出實績은 年中 平均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夏期에는 그 數가 減少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豚價에 있어서의 季節的인 變動때문인 것 같다.

別表 2A는 1961年과 1962年間의 月別 輸出 實績이다.

豚輸出商社는 豚의 弗貨價格에 精通하여 있어 輸出할 수 없는 豚에 對해서는 價格을 덜주고 사거나 全혀 購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香港市場에서는 去勢하지 않은 숫돼지 姙娠豚 其他 缺陷이 있는 豚에 對하여는 其 價格 引下를 하기 위하여 重量 減量手段을 取하는 것이다.

한 輸出商社는 이러한 現實때문에 그들이 購入한 生豚의 31%는 國內業者에게 販賣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었다.

冷凍豚肉도 香港에 輸出되고 있기는 하지만 其 數量은 아직도 미미한 것이다. 香港市場에서는 冷凍豚肉에 對해서는 無關心하여 冷凍豚肉에 對한 減價를 甚하게 한다는 것이다.

畜產物 輸入實績도 또한 1962度에는 增加하였다.(第2表) 過去 4年間에 있어서 肉類, 家禽, 牛脂等 輸入實績이 꾸준히 增加하여 온 것이 엿보인다. 粉乳및 原毛 또한 相當히 많이 輸入되어지고 있으며 1962年度에 輸入한 畜產物 總輸入額數는 1千5百60萬弗에 達하며 畜產物 輸出總額보다 1千百萬弗 假量이나 더 많은 것이었다.

飼料品目으로서 韓國에서 輸出된 것은 實際的으로 全혀 없으나 輸入된 것은 相當한 量이다. 小麥, 大麥, 小麥粉 및 大豆等이 其 主要輸入穀物인 것이다. (第13表) 1960～62年間에 輸入한 이러한 物資總輸入量中 美公法 480號에 依한 輸入量이 79%를 占하고 救護用 및 軍需用이 나머지 輸入量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마. 價格水準

諸物資에 있어서의 現在 및 過去 價格線이 때로는 方向決定過程에 있어서 指針이 될 수 있는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農村 및 小賣層에 있어서의 畜產物價格과 아울러, 畜產飼料價格에 對한 가장 重要한 要因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第12表 韓國

1959～62年間 年度別畜產物輸入實績

| 項目 | 單位 | 1959 | 1960 | 1961 | 1962 |
|---|---|---|---|---|---|
| 畜牛 | 頭 | — | — | 125 | 1,086 |
| 馬 | 〃 | — | — | — | 49 |
| 豚 | 〃 | — | — | — | 21 |
| 山羊 | 〃 | — | — | 50 | — |
| 家兎 | 〃 | — | — | 250 | — |
| 家禽 | 〃 | — | 1,203 | — | — |
| 卵類 | 個 | — | — | 504 | 28,070 |

| | | | | | |
|---|---|---|---|---|---|
| 原皮 | 〃 | 862 | 1,348 | 1,026 | 1,159 |
| 毛皮類 | 〃 | 1) | 186 | 202 | 97 |
| 原毛 | 〃 | 1) | 4,740 | 2,459 | 4,311 |
| 肉類(獸肉및禽肉) | 〃 | 1) | 4 | 60 | 158 |
| 蜂蠟 | 〃 | 1) | — | 1 | 1 |
| 獸骨, 蹄 | 〃 | 1) | 16 | 26 | 15 |
| 牛脂 | 〃 | 1) | 9,406 | 11,240 | 14,467 |
| 其他獸脂 | 〃 | 1) | 334 | 335 | 20 |
| 煉乳 | 〃 | 1) | 1,841 | 6,747 | 1,092 |
| 粉乳 | 〃 | 1) | 2,293 | 714 | 7,077 |
| 其他 | 〃 | 1) | 47 | 236 | 611 |

1) 數量未知

第13表 韓國

1960～1962年間 米穀年度別 總穀物導入量 및 美公法 480號에 依한 導入量

(單位：1000㎏)

| 項目 | 1960 | | 1961 | | 1962 | |
|---|---|---|---|---|---|---|
| | PL480 | 計 | PL480 | 計 | PL480 | 計 |
| 米穀 | — | — | — | — | — | — |
| 大麥 | — | — | 190 | 190 | — | 47 |
| 小麥 | 332 | 349 | 329 | 329 | 374 | 374 |
| 옥수수 | 10 | 10 | — | — | 1 | 1 |
| 수수 | — | — | — | — | 1 | 1 |
| 大豆 | — | 36 | — | 22 | — | 16 |
| 押麥 | — | — | — | — | — | — |
| 精麥 | — | — | — | — | — | — |
| 小麥粉 | — | 32 | — | 18 | — | 21 |
| 精小麥 | — | — | — | — | — | 1 |
| 其他 | — | 41 | — | 44 | — | 35 |
| 合計 | 342 | 468 | 519 | 603 | 376 | 496 |

出處：農林部 糧政局

1) 生畜 및 肉類價格

豚肉 및 牛肉에 있어서의 月別價格은 1960부터 1962年度間에 있어서 季節的인 變動이 別로 없었고(第14表) 다만 每年 一般時價가 上昇함에 準하여 年年 漸次的인 上昇을 나타내고 있다.

肉類에 있어서 이러한 季節的인 變動이 없는 理由의 하나는 韓國에 있어서 肉價는 各市 畜產企業組合(食肉業者組合)에서 決定하고 頻繁히 變更하지 않는것이 普通이기 때문이다. 例컨데 釜山에 있어서의 牛肉 斤當 112원이란 價格은 1961年度 3月 以後로 固定된 價格인 것이다. 小賣價格을 이렇게 固定한 結果로 나타난 現象은 小賣價格이 生產價格의 季節的인 變動을 反影하지 않는 것이다.

肉價는 地域과 都市에 따라 一定치 않으며 例를 들어 1963年度의 서울 釜山 및 光州에 있어서의 牛肉 및 豚肉價格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小賣價格 | | 都賣價格 |
|---|---|---|---|
| | 牛肉 | 豚肉 | 豚肉 |
| | 斤當價格 | | |
| 서울 | 100원 | 60원 | 46원 |
| 釜山 | 112원 | 64원 | 48원 |
| 光州 | 80원 | 56원 | — |

生畜에 對한 全國平均價格을 보면 季節的인 價格變動을 相當히 보여주고 있다.(第15表) 여기서 興味있는 것은 歐美間에 있어서의 定論과는 달리 牡牛가 肉用으로 販賣될 경우 牡牛보담 價格이 높다는 것이다.

2) 飼料

飼料確保與否는 畜產發展可能性을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인 것이다. 한나라에 있어서 利用할 수 있는 飼料資源은 어떤 것이고 其 全部가 家畜飼料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利用性을 左右하는 重要한 要素는 아마 飼料價格面일 것이다.

第14表 韓國

1960～62年度間 月別 牛肉, 豚肉 및 鷄肉全國平均價格

(單位：원)

| 月別 | 牛肉(근當) | | | 豚肉(근當) | | | 鷄肉(首當) | | |
|---|---|---|---|---|---|---|---|---|---|
|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 1月 | 60.0 | 70.0 | 83.3 | 40.0 | 40.0 | 49.5 | 100 | 110 | 120 |
| 2月 | 61.7 | 75.6 | 83.3 | 38.8 | 43.8 | 50.2 | 100 | 119 | 120 |
| 3月 | 66.6 | 76.2 | 83.1 | 39.0 | 46.0 | 54.0 | 108 | 112 | 124 |
| 4月 | 70.1 | 77.8 | 84.5 | 40.8 | 45.8 | 49.0 | 105 | 117 | 128 |
| 5月 | 71.5 | 84.2 | 87.6 | 42.6 | 45.2 | 53.0 | 102 | 124 | 122 |
| 6月 | 71.9 | 86.2 | 89.2 | 41.1 | 45.8 | 53.5 | 108 | 114 | 128 |
| 7月 | 72.9 | 83.7 | 90.1 | 42.9 | 43.0 | 54.7 | 106 | 108 | 130 |
| 8月 | 72.5 | 83.3 | 90.1 | 42.0 | 43.1 | 53.5 | 109 | 109 | 141 |
| 9月 | 71.9 | 83.9 | 90.1 | 40.9 | 44.0 | 54.0 | 109 | 114 | 147 |
| 10月 | 72.9 | 84.2 | 90.1 | 41.1 | 46.5 | 55.0 | 109 | 109 | 140 |
| 11月 | 75.5 | 83.6 | 90.1 | 43.2 | 47.5 | 55.0 | 106 | 139 | 138 |
| 12月 | — | 83.3 | 87.4 | 41.6 | 47.6 | 55.0 | 107 | 111 | 130 |

出處：農林部

第15表 韓國　　1959～1962年間 月別 및 畜種別 家畜價格

| 年 \ 月 | 1 月 | 2 月 | 3 月 | 4 月 | 5 月 | 6 月 | 7 月 | 8 月 | 9 月 | 10月 | 11月 | 12月 | 備　考 |
|---|---|---|---|---|---|---|---|---|---|---|---|---|---|
| 屠 殺 用 牝 牛(頭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10,936 | 11,193 | 11.238 | 12,699 | 12,763 | 12.185 | 11,550 | 11,419 | 11,860 | 12,201 | 12,090 | 12,345 | |
| 1 9 6 0 | 12,781 | 13,791 | 14,992 | 16,216 | 16,692 | 16,637 | 15,834 | 16,232 | 16,099 | 16,670 | 16,224 | 15,956 | |
| 1 9 6 1 | 16,339 | 17,218 | 17,690 | 18,098 | 18.518 | 17,933 | 17,598 | 17,713 | 18,076 | 17,578 | 17,147 | 16,944 | |
| 1 9 6 2 | 16,881 | 17,182 | 19,736 | 19,002 | 19,790 | 19,454 | 19,356 | 19,808 | 20,230 | 19,494 | 18,653 | 17,821 | |
| 屠 殺 用 牡 牛(頭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12,254 | 12,540 | 12,586 | 14,217 | 14,293 | 13,903 | 12,724 | 12,735 | 13,206 | 13,628 | 13,501 | 13,964 | |
| 1 9 6 0 | 14,158 | 14,900 | 16,567 | 17,922 | 18,426 | 18,317 | 17,426 | 17,486 | 17,932 | 18,438 | 18,024 | 17,607 | |
| 1 9 6 1 | 17,987 | 18,799 | 19,516 | 19,795 | 20,272 | 19,361 | 19,011 | 19,267 | 19,096 | 18,880 | 18,313 | 14,123 | |
| 1 9 6 2 | 18,202 | 19,252 | 19,743 | 20,080 | 20,665 | 20,754 | 20,558 | 21,187 | 21,063 | 20,746 | 20,014 | 19,197 | |
| 牝　犢　牛(頭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 | — | — | — | 2,683 | 2,795 | 2,817 | 2,911 | 3,041 | 3,114 | 3,024 | 3,193 | |
| 1 9 6 0 | 3,253 | 3,530 | 3,862 | 4,182 | 4,304 | 4,309 | 4,150 | 4,562 | 4,779 | 4,694 | 4,631 | 4,623 | |
| 1 9 6 1 | 5,095 | 5,195 | 5,466 | 5,603 | 5,802 | 5,593 | 5,662 | 5,743 | 5,721 | 5,425 | 5,868 | 5,661 | |
| 1 9 6 2 | 5,300 | 5,846 | 6,313 | 6,265 | 7,002 | 7,252 | 7,213 | 7,072 | 7,014 | 6,612 | 6,110 | 5,777 | |
| 牡　犢　牛(頭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 | — | — | — | 2,961 | 2,931 | 3,066 | 3,253 | 3,327 | 3,374 | 3,368 | 3,491 | |
| 1 9 6 0 | 3,564 | 3,817 | 4,258 | 4,467 | 4,658 | 4,696 | 4,609 | 5,004 | 5,221 | 5,134 | 5,106 | 4,959 | |
| 1 9 6 1 | 5,193 | 5,404 | 5,819 | 5,832 | 6,153 | 5,969 | 6,016 | 6,108 | 6,121 | 5,948 | 5,971 | 5,963 | |
| 1 9 6 2 | 5,479 | 6,263 | 6,881 | 6,700 | 7,197 | 7,562 | 7,553 | 7,384 | 7,065 | 6,856 | 6,367 | 5,995 | |
| 豚(75kg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2,047 | 2,065 | 2,017 | 2,017 | 2,101 | 2,110 | 2,059 | 2,121 | 2,130 | 2,149 | 2,159 | 2,140 | |
| 1 9 6 0 | 2,137 | 2,143 | 2,199 | 2,283 | 2,268 | 2,238 | 2,170 | 2,192 | 3,165 | 2,202 | 2,172 | 2,105 | |
| 1 9 6 1 | 2,203 | 2,261 | 2,409 | 2,452 | 2,522 | 2,417 | 2,456 | 2,457 | 2,541 | 2,665 | 2,745 | 2,968 | |
| 1 9 6 2 | 3,013 | 3,286 | 3,426 | 3,623 | 3,834 | 3,685 | 3,711 | 3,770 | 3,703 | 3,847 | 3,429 | 3,199 | |
| 鷄(首當원價格) | | | | | | | | | | | | | |
| 1 9 5 9 | 109 | 109 | 108 | 112 | 115 | 117 | 110 | 113 | 115 | 114 | 111 | 105 | |
| 1 9 6 0 | 107 | 107 | 107 | 111 | 112 | 116 | 118 | 120 | 117 | 118 | 118 | 116 | |
| 1 9 6 1 | 137 | 115 | 112 | 118 | 121 | 120 | 118 | 121 | 123 | 121 | 123 | 121 | |
| 1 9 6 2 | 118 | 127 | 122 | 134 | 139 | 142 | 148 | 151 | 144 | 144 | 137 | 132 | |

| | | | | | | | | | | | | |
|---|---|---|---|---|---|---|---|---|---|---|---|---|
| | | | | | 牡 山 羊(頭當원價格) | | | | | | | |
| 1959 | — | — | — | — | 912 | 945 | 838 | 831 | 868 | 893 | 893 | 873 |
| 1960 | 865 | 890 | 918 | 930 | 972 | 985 | 996 | 1,047 | 1,043 | 1,075 | 1,062 | 1,053 |
| 1961 | 1,288 | 1,097 | 1,122 | 1,149 | 1,137 | 1,154 | 1,114 | 1,131 | 1,034 | 1,281 | 1,129 | 1,215 |
| 1962 | 1,217 | 1,239 | 1,489 | 1,360 | 1,739 | 1,104 | 1,046 | 1,153 | 1,199 | 1,255 | 1,076 | 1,046 |
| | | | | | 役 牡 牛(頭當원價格) | | | | | | | |
| 1959 | — | — | — | — | 12,084 | 11,546 | 11,356 | 11,227 | 11,485 | 11,765 | 11,702 | 12,185 |
| 1960 | 12,753 | 12,384 | 14,774 | 15,949 | 16,378 | 16,203 | 15,441 | 15,819 | 16,170 | 16,319 | 15,820 | 15,563 |
| 1961 | 15,628 | 16,620 | 17,721 | 18,298 | 18,626 | 17,584 | 17,446 | 17,287 | 17,599 | 17,537 | 17,217 | 16,815 |
| 1963 | 16,974 | 18,000 | 18,426 | 18,017 | 19,817 | 19,677 | 19,297 | 19,155 | 19,962 | 19,513 | 18,775 | 18,072 |

出處：農協中央會調査部

第16表에 列擧한 것은 韓國에 있어서 家畜에 利用되는 主要 濃厚飼料 價格表인 것이다.

關係 試驗場에서 適切한 飼料分析과 營養價에 對한 硏究를 함으로서 現 價格水準에서 使用할 수 있는 가장 經濟的인 飼料選定이 可能할 것이다.

現在 使用되고 있는 分析 換算表는 너무나 槪括的인 것이며 飼料品目別 營養價 測定이 正確性을 期하지 못하고 있다.

## 二. 問題點

韓國畜産 및 肉産業分野에는 特別히 論議되고 檢討되여져야 할 點들이 있다. 이러한 點이란 畜産業의 正常的인 成長을 阻止하는 어떠한 特殊性 乃至는 作用인 까닭에 問題點이라고 한것이다.

1. 試驗事業

韓國에 있어서의 農業部門 試驗事業은 農村振興廳責任下에 있는 것이다. 이 機關은 其試驗局을 通하여 모든 畜産試驗事業을 監督하여 國內 數個 畜産試驗을 管理하고 있는 것이다.

總體的으로 本顧問은 大部分의 畜産試驗場에 있어서의 設備와 其運營方式에 大端히 感銘한 바이며 實質的으로 모든 試驗場은 其施設面에 있어서 充分하고 어떠한 試驗事業도 遂行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提議하는 바는 試驗場은 基礎試驗事業은 畜産試驗事業豫算이 좀더 豊富한 外國에 依存하고 韓國農民에게 有用한 實際問題에 其 試驗을 限定해야 할것이라는 것이다.

飼養管理, 雜種交配, 育種 成長率等에 關한 資料나 其他 이와 비슷한 基礎資料는 이미 美國에서 充分히 試驗되어 있으며 其 結果는 容易하게 入手할 수 있는 것이다.

大部分의 試驗場에 있어서 飼料面에 對하여 自給自足함으로서 豫算 節約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執着하여 있음을 볼 때 좀 어색하였다.

畜産試驗場 目的은 畜産試驗事業을 行하는 것이며 이 使命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하여는 其 모든 努力을 全的으로 이 目的에만 集中하여야 할 것이다.

第16表 韓國

1960～1962年間 月別濃厚飼料都賣價格

(單位：Kg當 원價格)

| 種別 / 月 年 | 米 | | | 大麥糠 | | | 小麥糠 | | |
|---|---|---|---|---|---|---|---|---|---|
|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 1 月 | 46.6 | 52.1 | 52.5 | 35.5 | 41.3 | 35.5 | 48.6 | 50.3 | 46.3 |
| 2 月 | 51.5 | 54.5 | 56.0 | 39.2 | 42.2 | 37.7 | 53.6 | 49.9 | 48.9 |
| 3 月 | 60.8 | 56.7 | 57.0 | 46.5 | 43.0 | 42 | 61.7 | 51.9 | 52.3 |
| 4 月 | 61.3 | 57.5 | 62.5 | 49.4 | 43.8 | 46.1 | 61.9 | 53.4 | 55.6 |
| 5 月 | 61.3 | 57.3 | 70 | 50.1 | 42.6 | 60.6 | 59.9 | 50.8 | 69.4 |
| 6 月 | 58.5 | 55.9 | 69.7 | 43.6 | 40 | 64.4 | 55.3 | 51.3 | 71.1 |
| 7 月 | 55.0 | 52.5 | 71.1 | 37.8 | 36.7 | 44.4 | 48.4 | 47.4 | 68.3 |
| 8 月 | 52.0 | 54.3 | 69.4 | 36.7 | 36.2 | 55.0 | 48.0 | 48.0 | 67.1 |
| 9 月 | 51.9 | 53.2 | 73.7 | 38.7 | 35.7 | 56.2 | 50.7 | 47.9 | 67.2 |
| 10 月 | 51.2 | 53.5 | 75.5 | 39.5 | 37.1 | 58.6 | 49.4 | 48.2 | 71.9 |
| 11 月 | 50.4 | 51.8 | 72.2 | 39.9 | 33 | 62.7 | 47.9 | 49 | 74.1 |
| 12 月 | 50.6 | 52.3 | 70.2 | 40.7 | 34.6 | 61.3 | 48.6 | 46.2 | 70.8 |
| 平 均 | 54.3 | 54.3 | 66.7 | 41.5 | 38.9 | 52.0 | 52.8 | 49.5 | 63.6 |

第16表(繼續)

| 種別 / 月 / 年 | 옥수수 | | | 수수 | | | 小麥 | | |
|---|---|---|---|---|---|---|---|---|---|
|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1960 | 1961 | 1962 |
| 1 月 | 65 | 99 | 103 | — | 98 | 97 | — | 102 | 99 |
| 2 月 | 79 | 115 | 105 | — | 101 | 104 | — | 115 | 107 |
| 3 月 | 80 | 112 | 110 | — | 110 | 112 | — | 122 | 114 |
| 4 月 | 78 | 128 | 115 | 61 | 120 | 110 | 91 | 128 | 120 |
| 5 月 | 84 | 130 | 121 | 65 | 130 | 120 | 94 | 130 | 132 |
| 6 月 | 83 | 132 | 120 | 65 | 130 | 122 | 75 | 132 | 130 |
| 7 月 | 84 | 120 | 121 | 69 | 104 | 120 | 76 | 121 | 117 |
| 8 月 | 75 | 110 | 137 | 70 | 97 | 150 | 78 | 110 | 124 |
| 9 月 | 70 | 106 | 160 | 63 | 97 | 144 | 75 | 106 | 121 |
| 10 月 | 70 | 102 | 138 | 71 | 92 | 128 | 73 | 102 | 133 |
| 11 月 | 83 | 98 | 134 | 78 | 94 | 130 | 78 | 98 | 136 |
| 12 月 | 85 | 101 | 121 | 85 | 95 | 118 | 85 | 108 | 145 |
| 平均 | 78 | 113 | 123.6 | 70 | 106 | 121.2 | 81 | 115 | 123 |

出處：農林部 畜產局 畜政課

다른 試驗場에서 飼料生產試驗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 또한 畜產試驗場에서 飼料를 生產하는것 보다는 一般 市場에서 飼料를 더싸게 購入할 수 있다는 것도 全的으로 可能한 것이다.

가. 國內生產飼料

이 畜產試驗場에서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은 國內에는 生產되는 飼料資源 利用試驗인 것이다.

이러한 飼養試驗에는 또한 畜種別 飼料利用效率 比較試驗도 兼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試驗을 함으로서 만이 어떠한 畜種이 어떠한 國內生產飼料로서 肉生產이나 乳生產에 있어 最大 純收益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決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試驗事業에 있어서 最優先 順位는 國內飼料와 關聯하는 事實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飼料分析

또 한가지 緊急한 分野는 飼料分析인 것이다. 韓國은 새로운 飼料資源을 개척하여야만 하는 까닭에 畜產試驗場에 있어서는 利用可能한 모든 潛在的 飼料에 對한 分析을 하는데 相當한 努力을 集中하여야 될 것이다.

粗蛋白質과 纖維質 含有量이 가장 緊急히 要請되는 問題이며 이 두가지 要素이외의 더 細密한 分析은 次後로 밀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時急한 問題는 可能한 限 빠른 時日內에 利用可能한 될 수 있는한 많은 飼料에 對한 蛋白質 含有量 分析을 하는 것일 것이다.

1963年度 畜產試產事業豫算에 있어 飼料分析 事業이 豫算配定이 가장 많은 事業中의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된것은 鼓舞的인 일이었다. 이 飼料分析 事業을 適切히 引導하고저 眞實하게 努力한다면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本事業에 對한 豫算配定은 비록 많이 되어 있었으나 必要한 器械購入費를 除外한 試驗事業費는 限定되어 있는 便이 었다.

라. 酪農試驗事業

어느 畜產試驗場이든 試驗事業費라는 것이 限定된 額數에 不過한 까닭에 試驗用 畜頭數가 적은 弊端이 있었으며 乳牛 試驗事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導入乳牛가 高價인 까닭에 試驗事業이란 最低名色을 維持하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農林部에서 大量導入하는 乳牛에 對해서 振興廳에서 種付計劃을 取扱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措置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個個畜에 對한 記錄이 記載될 수 있을 것이고 振興廳은 農民에게 飼養管理指導 및 知識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振興廳의 本使命과 符合하는 일이며 이렇게 하면 乳牛優良交配 試驗事業은 大端히 擴張되어 질수 있는 것이다.

마. 施 設

어느 試驗場이고 畜產試驗事業을 遂行하기에는 充分한 施設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施設面에 있어서 곳에 따라서는 家畜의 效果的 利用이라는 見地에서 권장되고 있는 現代的 方式에 따라 設備되어 있지 않는 機具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施設을 建立하거나 復舊를 하게될 경우에는 其 設計圖를 事前에 農林部 畜產專門家와 U.S.O.M. 農工顧問에게 檢討시키도록 할것을 提議하는 바이다

數個試驗場을 訪問하고서 받은 인상은 試驗場施設이나 職員數는 其試驗事業 實成果에 比하면 越等하게 많다는 것이 었다.

試驗事業이라고 列擧한 試驗事業의 大部分은 實質的으로는 單只 試驗場에서 家畜에 關한 記錄을 記入하는 것에 不過하였다.

試驗場에 따라서는 其 經費使用의 合理性을 뒷받침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疑心되는 곳도 있었다.

바. 技術職員

試驗場에 있는 技術者의 能力을 좀더 細密히 硏究하지 않고서 評價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技術者에 따라서는 自己 分野에 關하여 잘 알고 있어 아주 인상적인가 하면 反面에 아주 失望的인 技術者도 있었다.

優秀한 資格을 갖춘 技術者를 訓練한다는 것은 6個月으로서는 充分할 수가 없는 것이다. 試驗場의 最大效能을 위하여서는 技術者는 그 일하고저 하는 專門分野에 있어서 적어도 農科大學 卒業學位 程度는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에 試驗場 場長도 역시 적어도 農大卒業 學位 程度는 갖고 있고 여기에 될 수 있으면 其 以上 水準의 專門的 硏究業績도 있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젊은 사람들은 外國에서 專門硏究를 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이러한 追加的인 訓練을 받게 하는 장려策으로서는 보다 높은 敎育水準에 있는 사람에게는 財政的인 뒷받침으로서 報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農科大學 卒業學位를 갖고 있는 技術者는 高等學校 卒業證만 갖고 있는 技術者보다는 給料面에서 높은 資格을 주어야 할 것이다.

專門的인 試驗硏究者의 才能과 技術能力이 向上되여 지는것은 이러한 장려책을 通하여서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待遇面에 있어서 上記한바 技術者들의 給料는 國內大學에서 同等한 專門職位에 支拂하는 給料와 均等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며 平凡한 技術者는 其數가 많더라도 優秀한 資格을 具備한 小數技術者에 代置되는 것은 決코 아니다.

2. 敎導 또는 指導事業(畜產奬勵와 指導)

指導事業과 一般 農村指導員 訓練은 農村振興廳 指導局 所管인 것이다. 指導局 職員들과 接觸할 機會는 別로 없었으며 畜產指導事業의 效果를 評價함에 있어서는 指導局에서 나오는 公報刊行物에 依存하였다.

畜產 및 畜產生產에 關한 刊行物은 其數量에 있어서 充分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其 內容이 農民이 理解하고 納得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였다. 實際에 있어서 畜產分野에 關한 刊行物은 極히 小數였으며 畜屬別生產價에 關한 것은 全無하였다. 畜產分野에 屬하는 것으로서 農民敎本 몇가지 리프렛 및 其他 刊行物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檢討하여 보면 普通 農民들이 쉽게 理解할 수 있을만 한것은 다섯가지에 不過하였고 其中 農民에게 實際有用할 것은 單只 세가지 뿐인 것이다.

畜產分野에서 指導事業으로서 相當히 必要한 主要部門은 畜產施設과 農村畜舍部門인데 이 部門에는 畜產物處理加工施設도 亦是 包含되는 것이다. 畜舍 및 加工處理施設에는 莫大한 資金이 消費되어 있었으나 實際面으로나 效能面에서 볼때 距離가 먼것이 되여 있었다.

畜產生產者가 關心을 가져야 할 部門으로서 充分히 強調되여 있지 않은것이 있는데 例컨데 農林部나 振興廳은 모두 家畜퇴비가 畜產生產者에게나 作物耕作者에게 모두 重要함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農民에게 퇴비의 價値를 說明하여주는 刊行物이 나간것이 없었다.

試驗場에는 試驗結果資料가 相當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農民에게나 畜產 生產者에게 알리지 않는 限 그 有效性은 死藏되여 버리는 것이다.

또 한가지 缺陷을 보여주는 面은 生產價關係인 것이다. 돼지와 닭에 對한 配合飼料를 配合하는데 必要한 飼料를 各各 表示한 指導 포스타가 하나 있었는데 其 포스타는 비록 색채가 豊富하고 藝術的으로 作成되여 있기는 하였으나 畜產生產者에게 實際的 知識을 줄만한 것은 別로 없었다.

家畜飼養者 乃至는 生產者가 自己들의 돼지나 닭에 단지 配合飼料를 給與하기 위하여 과연 그 포스타에 列擧되여 있는 飼料品目을 모두 그대로 購入하고져 할 것인지 乃至는 할 수 있을것인지 大端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 포스타의 重要缺陷은 거기에 列擧한 飼料品目 其 比率 및 配合은 實際面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配合飼料中 한가지만을 例示한 것이라는 點을 強調하지 않는 것이다. 現價格 水準下에 있어서는 畜產生產者에게 于先 時急한것은 어떠한 材料를 써서 配合한 配合飼料가 가장 經濟的이면서 其 效率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일 것이다.

費用이 가장 적게드는 配合飼料와 經濟的인 畜產生產이라는 이 分野 全體 全般에 걸쳐 充分한 硏究가 되여 있지 않는 것이다.

指導刊行物에 있어서 內容이 充實치 못한 缺陷은 振興廳外에 있는 畜產專門家 들에게서 事前에 檢討인정을 받는다는 公的節次가 없는데 아마 由因할 것이다.

이러한 檢討를 걸치게 되면 正確性을 期하게 될뿐더러 보다 重要한 問題分野에 其 刊行物이 指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畜產協同組合

畜產組合에는 몇가지 類型이 있는데 여기에 共通된 한가지 特徵은 農民에 依하여 또는 農民을 위하여 運

되는 것이 아니라 農民과 分離된 事業體로서 運營되고 있다는 것이다.

家畜市場에 있어서 畜協은 生產者를 위하여 家畜 購販仲介를 하는 仲介人을 採用하고 있으며 이 奉仕에 對하여 또는 이러한 奉仕를 안하였더라도 組合에 市場에서 家畜이 賣買된 것을 알게 되면 市價의 2%에 해당하는 手數料를 賦課한다. 이러한 까닭에 市場에서 돌아와서 "非法的"으로 家畜을 팔거나 市場內에서 눈에 뜨이지 않게 販賣하는 農民이 많다.

農民이 組合 仲介奉仕를 願하든 않든 仲介料는 支拂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仲介料는 勿論 市場運營者가 其 施設 使用料로서 賦課하는 正常的인 市場料이의의 것인 것이다.

農民은 市場에 들어가면 自己家畜을 販賣하는 特權을 얻기 위하여 其 市場使用料는 支拂하여야 한다. 組合手數料는 一種의 家畜 買賣稅 役割을 하는 것이다. 現實的으로 그것이 一種의 稅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畜牛를 利用하는 모든 利用者에게 그 稅金이 分擔되는 것이라는 것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現狀으로서 買者와 賣者가 其 稅金을 分擔하고 있으며 其 同一한 家畜은 買賣될때마다 課稅될 수도 있을 것이다.

肉賣層에 있어서 課稅되는 稅金에 對해서도 肉消費者는 이 稅金負擔에 있어서 亦是 分擔하게 될 것이다. 牛乳 鷄卵 및 토끼 處理操作을 하기 위한 組合들도 亦是 있는데 이러한 組合은 其株를 一定한 有資格 農民에게 파는 것이다.

組合에 加入할 資格을 얻자면 農民은 所要最低 資格을 具備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小農은 加入할 수가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非會員은 自己產物을 組合에 販賣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第17表는 組合員이 되기 爲하여 農民이 所有해야할 最低家畜頭數를 表示한 것이다.

組合株는 한株에 1,000원이며 이 組合員株를 사게되면 그는 그 代價로서 自己의 生產物을 組合에 販賣할 資格이 附與되며 한株에 對한 支拂額의 5% 範圍內에서의 株配當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즉 처음 投資한 1.000원을 뽑아 내려면 最小 20年은 걸린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諸點은 農民이 組合에 加入하고저 하는 意慾이나 自己 同僚加入을 勸誘할 意慾을 挫折시키는 것이다. 또한 農民이 組合事業이 잘되기를 바랄만한 刺戟도別로 存在하지 않는데 이것은 農民의 立場으로 볼때 組合이란 어떤個人 企業體와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畜產組合이 畜產生產을 장려하는데 成果를 얻고져 한다면 組合은 어떠한 根本的인 改革을 하여야 할것이다. 組合組織規定에는 組合員에게 좀더 正當한 利潤配定을 할 수 있는 條項이 있지만 地方組合에 있어서 配當金以外의 利潤配當을 할 수 있는 어떠한 調整을 하여본 일이 있는지 極히 의심스럽다.

4. 畜產物 輸出政策

돼지와 肥料의 求償貿易에 對한 解釋과 그 實際成果에 對한 見解에는 異論이 많으며 政府機關內에 있어서도 機關에 따라 이 貿易方式의 目的과 原則에 關하여 見解가 一致하지 않다.

肥料導入을 하지않고 生豚을 輸出하는 商社란 있다고 할지라도 稀少하다. 本計劃의 根本은 生豚을 韓國에서 香港으로 輸出하는 것인데 이리하여 獲得한 弗貨는 日本에서 肥料를 購入하여 作物生產用으로 韓國에 輸入하는데 使用되는 것이다.

第17表 韓國

畜產協同組合會員資格所要最低家畜頭數

1963. 11

| 畜種 | 最低所要頭數 |
|---|---|
| 韓牛 | 5 |
| 乳牛 | 2 |
| 在來山羊 | 8 |
| 豚 | 30 |
| 家鷄 | 100 |
| 오리 | 250 |
| 密峰 | 250 |
| 사슴 | 50[2] |
| | 2 |

1) 畜協組織에 必要한 有資格會員 最低基準數는 50名
2) 密峰箱數

이러한 무역을 하기 위하여 政府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輸出入 商社는 數個商社에 達하며 이리하여 導入한 肥料는 中央農協에 販賣되고 여기서 農民에게 分配되는 것이다.

韓國內에서의 正常的인 生豚價格과 香港에 있어서의 生豚價格差로 말미암아 어떠한 形式의 補助없이는 收益性있는 輸出을 할 수 없는 까닭에 政府는 이러한 貿易商社에 特權과 補償을 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商社에 주어지는 特別配償金은 韓國에 導入한 肥料弗貨價値에 根據하고 있으며 導入된 肥料의 弗當價格에 對하여 輸出入 商社는 農林部가 定하고 商工部가 認定한 特別 換算率에 따라 農協에서 원貨支拂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加算支拂率에 根據 額數 및 內譯에 對한 解釋이 商社마다 全혀 다른것은 奇異할 일이였다

政府 補償에 關한 實際算出은 農林部 畜產局에서 한것이며 다음 表는 원加算支拂 算出基礎를 說明하는 것이다.(第18表)

이제 釜山에 있어서의 生豚價가 貫當 200원이고 香港價格이 톤當 375弗일 경우에 輸入出 商社는 農協에 販賣한 肥料에 對하여 每拂當 130원(公正換算率)에 54원을 加算한 것을 支拂받게 될것이다. 이 支拂額에는 輸送費 包裝費 損耗費 飼養費 其他 雜費 및 利潤에 이르는 모든것이 包含되여 있는 것이다.

이 圖表 數字에 있어서 원 單位에서 끊는것이 普通이지만 小數點以下에 對해서도 政府에서 좀 伸縮性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商社를 위한 實際適用換率은 어떻든 間에 輸出入 商社의 一致된 見解는 現時價로서는 豚을 購入하여 輸出販賣하는 經費가 政府加算 支拂額을 超過한다는 것이다.

이 商社들은 現時價는 契約締結 當時와는 훨씬 다르다고 主張하는 것이였다.

契約 有効期間은 一年間이나 加算支拂線은 其 有効期間內에는 隨時로 調整할 수 있는 것이다.

第18表 韓國　　香港輸出生豚補償換算表

1963. 11

| 頓當美拂 | 生豚貫當 (3.75Kg) 在釜山價格 | | | | | | | | |
|---|---|---|---|---|---|---|---|---|---|
| 香港價格 | 147 | 155 | 163 | 170 | 175 | 178 | 186 | 194 | 200 |
| 375 | 1.68 | 9.23 | 17.52 | 25.30 | 29.20 | 33.09 | 40.88 | 48.66 | 54.50 |
| 380 | | 7.68 | 15.37 | 23.05 | 26.89 | 30.74 | 38.42 | 46.10 | 51.87 |
| 400 | | | 7.30 | 14.60 | 18.25 | 21.90 | 29.20 | 36.50 | 41.98 |
| 420 | | | | 6.95 | 10.42 | 13.90 | 20.85 | 27.80 | 33.02 |
| 440 | | | | | 3.31 | 6.63 | 13.27 | 19.90 | 24.88 |
| 450 | | | | | | 3.24 | 9.73 | 16.22 | 21.08 |
| 460 | | | | | | | 6.34 | 12.68 | 17.45 |
| 480 | | | | | | | | 6.08 | 10.64 |
| 500 | | | | | | | | | 4.38 |

1) 이 計數는 公正換算인 1弗對 130원에 加算하는 補償額數를 表示한다.
本補償에는 利益金, 豚損耗 輸送料 및 其他 모든 經費가 包含되여 있음

그러나 農林部에서 알고 있는 限 今年에 이러한 調整을 申請하여 온 商社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現實的으로 輸出入商社는 政府에서 損失의 大部分을 補償하여 주는 까닭에 豚輸出에 있어 收支均衡을 잡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損失을 招來하는 가장 問題되는 要素는 時期에 있는 것이다. 商社들은 肥料先輸入이 許可되여 있어 外換負債를 싸여놓고 다음에 이費貨購買分을 메우기 爲하여 돼지를 輸出하는 것이다.

商社들은 其 肥料代金을 支拂하기 위하여 돼지를 輸出하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 時價가 如何하는 輸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輸出商社는 제각기 其購入한 豚에 따라 最大弗貨를 획득하고저 最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商社들은 釜山地方에 豚繫留舍를 갖고 있으며 이 繫留舍는 豚頭數가 出積하기에 合當할 만치 充分한 數에 達할때까지 돼지를 集結하는데 使用하고 있다.

繫留期間은 約 1~2週日이 普通이지만 極端的으로는 2~3日間으로 부터 3個月間에 達하는 것도 있다.

商工部는 1963年 正月 1日現在로서 이러한 豚輸出商社에게 그들의 貿易實績一部를 公賣할 수 있도록 許容하였다. 其結果 豚輸出을 하는 商社는 豚輸出弗에 對

하여 每弗當 12.5원의 增加 割當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좀 複雜한 去來節次를 다음 例로서 說明하여 본다.

A라는 한 商社가 商品輸入을 하고저 하니 輸出實績이 없는 까닭에 商工部 輸入許可가 없다고 하자.

이 反面에 B라는 商社는 돼지와 肥料求償貿易契約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弗貨交易으로 因하여 其自體가 당장 必要한 이상의 輸出實績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A商社는 B商社의 貿易實績一部를 合法的으로 購買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其實績에 주어지는 價値는 公正換率과 市中換率과의 差額의 折半으로 되여있다.

現在 其差額은 約 25원인 것이니 이것은 即 實績額面去來價格은 輸入弗當 125원에 達할것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豚輸出을 補償하는 現制度는 財政的인 困難性을 助長할 수 밖에 없다. 肥料代金을 支拂하기 爲하여 돼지는 輸出하여야 하니 돼지 公買價格을 앙등 시킬것이며 輸出豚數가 많아지니 남아있는 돼지의 需要는 增加하고 其頭數는 적어지는 까닭에 結果的으로 國內豚價가 上昇하게 될것이다. 價格이 上昇한다는 것은 豚輸出業者 損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意味할것이다. 또한 香港에서는 豚輸入이 增加하면 香港市場에 있어서의 生豚 乃至는 豚肉價格은 相對的이로 下落할것이며 其結果는 亦是 韓國輸出業者가 收益을 얻을 機會가 적어질 것이다.

損害는 漸次 더 보면서 外換獲得을 위하여 豚輸出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원貨價値低落을 招來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過程은 一種의 陶汰的 원貨平價切下인 것이다.

畜產 및 畜產物의 輸出이라는 問題는 其問題 全體가 食糧이 不足한 나라에서는 深刻하고도 의문시되는 分野인 것이다.

輸出한 한마리의 돼지는 그것이 單只 90kg까지 生豚이 國外에 販賣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飼料 540kg이 輸出되는 것을 또한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交易은 外換獲得은 될런지 모르지만 同時에 韓國에 食糧不足은 더 甚하게 하는 것이다.

畜產이란 飼料를 可用食糧으로 轉換시키는데 있어 比較的 非效能的인 方法인 것으로서 其 生產原價가 收入額을 超過할 수도 있는 것이다.

收益을 얻으려면 畜產物 最終販賣價格이 給與한 飼料價를 超過해야만 할 것이다.

5. 食肉小賣價格制度(體系)

政府는 衛生的인 食肉販賣를 維持하기 爲한 措置를 通하여 強力한 食肉組合發展에 拍車를 加하는 것이다. 이 組合은 市單位로 構成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550個 組合員 店舖가 있는 것이다.

各組合은 其該當市에서의 食肉小賣價格을 設定하고 있으며 모든 組合員은 其設定價格을 使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서울과 釜山에 있어서 牛肉價格은 1961年度 4月에 更新된것이 가장 最近것이었다. 食肉小賣業者들의 이러한 完全한 結束은 價格競爭을 함으로써 結果的으로 販賣價格引下를 招來할 餘地를 주지 않는 것이다. 年中 不變價格을 維持하고 있으므로 生牛와 生豚價格의 變動은 食肉業者의 販賣收益의 相當한 變動을 招來하는 것이다. 現在 畜牛價格이 높으므로 食肉業者의 原價와 收益額間의 差額은 아마 年中 가장 낮을 것이다.

固定된 小賣價格의 制度下에서는 價格이라는것이 其各作用段階에 있어서의 需要供給을 反影한다는 基本機能을 發揮할 수 없는 것이다. 小賣價格이 不變으로 되어있는 販賣制度를 通하여서는 畜產物供給調整이 效率的으로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畜產業이 擴張함에 따라 時期的으로 大量供給이라는 問題는 보다 더 普遍的인 問題化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政府는 食肉組合과 相議하여 肉用畜의 時價에 根據하여 食肉小賣業者에 對한 一定한 收益線을 確立하도록 考慮할것을 提議하는 바이다. 이러한 收益線이란 小賣食肉과 生畜價格間에 頭當 몇원이란 金額으로 乃至는 比率로서 定할 수 있을 것이다.

가. 畜產市場公報

家畜市場에 出場되는 畜牛中 市場에서 實際販賣되는 것은 其中 約 半數 假量이며(第19表) 다음에 큰比率을 차지하는 것이 市場을 떠난 後에 販賣되는 것이고 其他 殘餘畜은 되돌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이 돌아간 畜牛도 亦是 其後 얼마 안되어 近處에 팔리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어째서 家畜을 都市까지 끌고와서 市場使用料를 支拂하고는 또 집으로 도루 끌고 가는 노고를 하는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對한 解答은 簡單한 것이다. 이것은 農民이 利用할 수 있는 價格公報가 없기 때문이며 家畜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方法이 農民이 自己家畜에 對한 市價를 決定하는 唯一한 方法인 것이다.

第19表 韓國　　畜牛 및 豚買賣狀況道別市場出場數및實際買賣頭數—1962

| 特別市및道 | 市場數 | 畜牛 | | | 豚 | | |
|---|---|---|---|---|---|---|---|
| | | 出場頭數 | 實際買賣頭數 | 出場數對比率 | 出場頭數 | 實際買賣頭數 | 出場數對比率 |
| | | 頭 | 頭 | % | 頭 | 頭 | % |
| 서울 | 2 | 28,040 | 24,369 | 87 | 34,337 | 32,003 | 93 |
| 京畿 | 72 | 165.040 | 82.625 | 50 | 45,442 | 25,716 | 57 |
| 忠北 | 26 | 116,296 | 54,614 | 47 | 29,347 | 16,923 | 58 |
| 忠南 | 45 | 125,470 | 60,719 | 48 | 101,790 | 69,499 | 68 |
| 全北 | 55 | 85,873 | 48,497 | 56 | 84,342 | 53,792 | 64 |
| 全南 | 79 | 114,584 | 55,807 | 49 | 164,517 | 97,903 | 60 |
| 慶北 | 142 | 369,037 | 152,202 | 41 | 111,546 | 60,399 | 54 |
| 慶南 | 107 | 304,325 | 123,234 | 40 | 245,700 | 148,900 | 61 |
| 江原 | 88 | 87,849 | 48,221 | 55 | 5,738 | 3,898 | 68 |
| 濟州 | 13 | 4,467 | 4,070 | 91 | 772 | 696 | 90 |
| 合計 | 629 | 1,400,981 | 654,358 | 47 | 823,531 | 509,729 | 62 |

家畜買賣에 關한 資料에 依하면 每年 家畜市場에 出場된 畜牛數는 約 畜百萬에 達하는데 市場에서 買賣되지 않는 頭數는 2/3百萬頭에 가까운 數字인 것으로서 이것은 即 數百萬원이 販賣되지 않은 家畜을 市場에 내는데 所費되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한 解決策은 比較的 簡單한 것이나 政府關係者로서는 畜產生產者를 相當히 啓蒙시킬 必要가 있을 것이다.

畜產時價를 通報하는 市場公報制度 같은 것은 容易하게 成就될 수 있을 것이다.

家畜市場에 있는 地方農協 파견員은 여러層 家畜을 類型別 年齡別 및 重量別로 其時價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얻은 時價資料를 地方郡廳, 農協事務所, 道畜政課 및 農林部 畜產局에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地方關係 機關과 畜產局은 이렇게 收集한 報告資料를 新聞 其他 通信機關을 通하여 傳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까지 傳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農民이 上記한 어느 地方關係 機關에든지 들려서 時價가 어떠한지도 알아 볼수가 있을 것이다.

畜產市場 公報制度는 農民과 政府公務員間의 보다 좋은 理解와 協同關係를 促進시키는데 이바지 하는바가 많을 것은 勿論 韓國 畜產市場 改善向上도 招來할 것이다.

나. 技術支援

韓國畜產業에 技術支援이 切實히 必要하다는 것은 의심할 餘地가 別로 없다.

그러나 그 必要性이란 範圍가 넓고 또한 極히 專門的인 面에 있는 것이다.

家畜營養 飼料配合 및 利用等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助言을 要求받은 바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데 對한 必要性에 응하기 위하여는 家畜營養專門家가 適合할것이다.

一般 畜產飼養 專門家의 奉仕를 要하는 畜產飼養管理 및 施設分野에도 또한 切實한 問題들이 있고 振興廳 指導局을 돕기 爲하여는 畜產指導事業 專門家가 必要하다. 이러한 種類의 技術고문관의 必要性은 이나라 畜產業이 發展함에 따라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當場 要求되는 것은 畜產經濟分野인 것이다. 韓國畜產業을 한層더 發展시키기 위한 長期計劃과 指針은 지금 必要한 것이다.

時急히 配慮하여야 할 問題로서는 地域別 適正 畜種에 對한 經濟性決定 : 韓國에 있어서 代置할만한 候補畜種에 關한 生產價分析 : 乳生產 및 分配體系 全般에

걸친 經濟性評價 : 最底價格 飼料配合에 關한 指導 : 畜産管理 및 購販關係等인 것이다.

本顧問은 短期滯留期間동안 韓國畜産生産을 위한 總體的인 方向을 大略 잡아보려고는 하였지만 成果있는 結實을 期하기 위하여는 보다더 廣範한 硏究와 繼續的인 指導가 必要할 것이다.

다. 政府指導와 調整

韓國政府가 畜産業을 發展시키고자 熱意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成敗는 이에 對한 農民의 受納如何에 달려있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畜産業은 萬一 畜産生産者 즉 農民이 家畜을 飼養하므로서 收益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成長하고 繁榮할 것이다.

그렇다면 政府의 責任이란 畜産業을 統制하고저 할 것이 아니라 보다더 經濟的으로 健全한 앞날을 指向할 수 있도록 指導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韓國의 畜産成長은 振興廳 指導局을 通한 必要한 資料의 適切한 普及에 依하여 자극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知識普及을 하는 同一한 方法이 畜産業을 收益性있는 産業으로 形成시키는데도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릇된 方向이란 非現實的인 補助, 장려 및 特別補償等을 通한 虛空的인 經濟를 創造하는데서 由因되는 것이다.

韓國의 畜産業은 自由市場에서 競爭價格으로서 買賣하는 競爭的인 農業企業으로서 其自體의 實力으로 成長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防疫 및 診療

全國的으로 治療患畜數는 많았는데 其 77%가 돼지와 닭이 占有하고 있었다.

比率的으로 보면 疾病治療를 받은 畜牛數는 아직 相當이 적은 것이다.

그러나 畜産業이 發展함에 따라 疾病問題는 점점 날카로운 問題가 될것이 豫期된다.

成功的인 疾病防止의 先決問題는 中央試驗場 民間種畜場 및 道種畜場에 있어서의 疾病을 完全히 없이하는 것이어야 할것이다.

本顧問은 어떤 道種畜場이 完全히 非衛生的이고 疾病助長的 狀態下에 있었음을 보았을때 衝擊을 받았다.

이러한 機關에서의 疾病發生은 其生産畜이 農民에게 配布되었을 경우 可恐할 比率로서 蔓延하는 것이다.

疾病豫防 및 防止는 本고장에서 이루어 져야만 할것이다.

마. 屠畜政策

屠畜 및 肉小賣에 있어서의 衛生向上을 爲하여 政府는 各 食肉店舖는 短期肉保管 冷藏庫를 具備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大都市內에서는 食肉業者는 肉冷藏展示庫가 없으면 營業許可證을 얻을 수가 없다.

食肉業許可證이 없다는 것은 肉販賣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할뿐만 아니라 其業者는 公認屠場에서 家畜을 屠殺할 수도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결혼式 때나 혹은 큰 行事時에 自家消費를 爲하여 家畜을 屠殺하고저 하는 者에 對해서는 特別히 許可가 부여되기는 하지만 現實的으로 이것은 소를 所有하고 있는 사람이 合法的으로는 그것을 屠殺하여 그 고기를 洞里에 팔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制限은 衛生이라는 假裝下에 肉消費를 甚하게 限定하는 것이다.

肉都賣業者의 發展도 역시 阻害되고 있는데 이것은 肉都賣業을 할 수 있으려면 于先 店舖를 가진 有許可食肉業者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現在 都賣業者는 食肉業者의 許可를 빌어가지고 自己家畜을 屠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制限的 規則을 改善한다면 農民들에게 肉類事業에 넓게 들어 갈수 있는 機會를 주게될 것이며 公認屠場利用을 促進시킬 것이며 非法的이고 非衛生的인 뒷들안 屠殺을 減少시킬 것이고 小賣層에 좀더 競爭을 提起할 것이며 이리하여 全體的으로는 肉去來價格을 低下시키게 될것이다.

이러한 調節節次를 通하여 家畜生産者에게 肉으로서의 畜牛의 價値에 關하여 敎育시킨다면 이나라의 畜産業에 巨大한 成果를 줄수 있을 것이다.